

재무설계 개론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69	하5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기댓값이 더 적은 D를 선택해야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손실의 기댓값이 더 적은 D를 선택해야	문구삽입

보험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91	상1	②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②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문구삽입
91	상3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문구삽입
91	상4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문구삽입
91	상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문구삽입
207	상3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진단 확정 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문구수정
248	표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일 경우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일 경우	문구수정
253	상6	• 담보의 자동복원기능, 즉 80% 이하의 보험사고에	• 담보의 자동복원기능, 즉 80% 미만의 보험사고에	문구수정

투자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7	하3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 1,200 만 원까지는 3.3~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1,200 만 원을	55 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 1,500 만 원까지는 3.3~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1,500 만 원을	금액수정
18	표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총급여액 7천만 원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총급여액 7천만 원 이	금액수정 문구수정

		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연간 납입액 240만원 까지 불입액의 40% 소득공제(공제한도 96만 원))	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연간 납입액 300만원 까지 불입액의 40% 소득공제(공제한도 120만 원))	부호삽입
18	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세제혜택: 연 240만 원 범위에서 40% 소득공제(최고 공제한도 96만 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세제혜택: 연 300만 원 범위에서 40% 소득공제(공제한도 120만 원)	금액수정 문구삭제

부동산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41	표	청약예금 순서별 조건	주택청약종합예금/청약예금 청약부금	오타수정
216	상6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펀드는 100인(단, 일반투자자수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문구수정
216	상9	단, 자산 500억 원 이상인 경우	단, 자산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문구수정

은퇴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67	하4	총은퇴일시금은 연간 은퇴소득	총은퇴일시금은 은퇴시점 물가기준으로 연간 은퇴소득	문구삽입
90	하6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0.7×(200만 원-110만 원)+30만 원]+배우자소득분[0.7×(150 만 원- 108 만 원)] = 121만 원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0.7×(200 만 원-110 만 원)+30 만 원]+배우자소득분[0.7×(150 만 원- 110 만 원)] = 121 만 원	금액수정
96	박스	하단박스	[첨부] 참조	내용수정
102	상3	46,000 원을 지원한다.	46,350 원을 지원한다.	금액수정
103	상7	가산기간 중 연금보험료 는 실직 전	가산기간 중 인정소득 은 실직 전	문구수정
105	상4	자녀는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양자,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포함)를 말하고, 부모는 60세(출생연도별 지급연령 상향조정)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이다.	자녀는 19 세 미만 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 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를 말하고, 부모는 60 세(출생연도별 지급연령 상향조정)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상	문구수정

			장애등급 2 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이다.	
160	하4	2023.3월 이후 개인연금저축과	2013.3월 이후 개인연금저축과	년도수정
180	하3	연금저축은 일부 해지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제외)은 일부 해지가 가능하다.	문구수정

[첨부] 96페이지 하단박스. 내용수정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직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그 배우자 포함)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다만, 연계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세금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56	상11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금액수정
80	하6	①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①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내용수정
129	하5	배당액에 11/100을 더하는 금액으로서	배당액에 10/100을 더하는 금액으로서	오타수정
175	표	표 6-8	[첨부] 참조	내용수정
177	하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재산세	문구수정

		과세대상 중 주택(별장 제외), 종합 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 상 토지이며 별장 및 분리과세대상	과세대상 중 주택(별장 포함), 종합 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 상 토지이며 분리과세대상	문구삭제
--	--	---	---	------

[첨부] 175페이지 표. 표수정

표 6-8.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주택 재산세 세율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6,000만원 이하	0.1%	0.05%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 6,000만 원 초과금액의 0.15%	3만 원 + 6,000만 원 초과금액의 0.1%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1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42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35%

상속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8	상4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 대습상속 및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 대습상속 이 인정되지만 유류분권은 인정되 지 않는다.	내용수정
62	상6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단어수정
91	상6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는 유 류분권리자다.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은 유류분권리자 다.	내용수정
91	상10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 분의 1/3이다.	문구수정
161	하4	1주당 주식평가액 = (100x2 + 30x3)/5 = 58	1주당 주식평가액 = (100x3 + 30x2)/5 = 72	계산수정
162	해설	• 1주당 순손익가치 = [(3억 원 x3)+(2억 원x2)+(1억 원 x1)]÷ 6% ÷10%÷1만 주 = 233,333원	• 1주당 순손익가치 = [(3억 원 x3)+(2억 원x2)+(1억 원 x1)]÷ 6 ÷10%÷1만 주 = 233,333원	%삭제

203	사례	자산가인 김갑부 씨는 ... 어느 정도 유리할까? (취득세 등은 고려하지 않음)	자산가인 김갑부 씨는 ... 어느 정도 유리할까? (취득세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공제액은 3억 원으로 가정함)	문구수정
203	해설	(=) 산출세액 700,000 (-) 신고세액공제(3%) 21,000 (=) 납부세액 679,000	(=) 산출세액 700,000 (-) 납부세액공제 300,000 (-) 신고세액공제(3%) 12,000 (=) 납부세액 388,000	계산수정
203	하2	(-) 신고세액공제(3%) 21,000	(-) 신고세액공제(3%) 12,000	금액수정
204	중간	증여세 합계 = ①+② = 897,250천 원	증여세 합계 = ①+② = 606,250천 원	금액수정
204	하3	증여하는 경우보다 613,525천 원만 큼	증여하는 경우보다 322,525천 원만 큼	금액수정